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8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박정현 · 이연희 · 이재정
문진석 · 이광희 · 이학영
박홍배 · 양부남 · 김동아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의 편리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생략) <u><신 설></u>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 린이놀이시설의 접근성과 편의 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생략) <u><신 설></u>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어 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 한 지원) (생략) <u><신 설></u>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 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의 편리한 어린이

<u>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 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